#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09

발의연월일: 2025. 3. 11.

발 의 자:임호선·복기왕·김재원

문대림 • 오세희 • 이재정

정준호 · 정일영 · 김영호

임미애 · 김동아 · 김영진

권향엽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,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·관리하기 위하여 시·군·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되, 시·군·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.

그런데 인구 과밀 지역뿐만 아니라 면적이 넓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이동, 교통 등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인구, 행정구역, 면적, 지리적 특성, 교통 등을 함께 고려해 보건소를 추가설 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시·군·구의 인구, 행정구역, 면적, 지리적 특성, 교통 및 그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(안 제10조제1항 단서).

법률 제 호

##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단서 중 "시·군·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"을 "시·군·구의 인구, 행정구역, 면적, 지리적 특성,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0조(보건소의 설치) ① 지역주	제10조(보건소의 설치) ①		
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			
예방・관리하기 위하여 시・군			
•구에 1개소의 보건소(보건의			
료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			
설치한다. 다만, <u>시·군·구의</u>	<u>시·군·구의</u>		
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	인구, 행정구역, 면적, 지리적 특		
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	성,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		
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	<u> 려하여</u>		
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		
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			
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			
설치할 수 있다.	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